

## 시인의 마을



농부의 넉넉한 마음이다  
바람과 맑은 공기, 햇살 가득  
풍성한 수확을 기다리는

우물가 담장 너머다  
평화롭고 따뜻한 숨결에  
마당을 지나, 깊이를 헤아리기 어려운

한 남자처럼, 명예\*를 짚어진다  
담배 피워 물고  
하늘만 바라보던 눈빛마다

세상 풍파와 맞선다  
웃소매에 닦아  
익숙한 듯이, 시큼하게 배어 물고

맞깔나고 새초롬하다  
빼꾸기 소리처럼  
짧은 미소가, 살구나무 가득

\*명예 - 사람의 마음이나 행동에 있어서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구속이나 억압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 달구지나 쟁기의 채를 잡아매기 위해 소나 말의 목에 가로 얹는 등그렇게 구부러진 막대

## 살구

## 『시詩를 담다』

바람이 불면, 마당 가득 살구다. 그 많은 살구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주워 /웃소매에 닦아/익숙한 듯이/시름하게 베어/불면/ 행복한 시절이 있었다. /바람과 맑은 공기/햇살 가득/풍성한 수확을 기다리는/농부의 마음이 /평화롭고 따뜻한 숨결에/마당을 지나/우물가 담장 너머/한 남자에게 머문다.

바로 아버지다. 세상의 모든 일을 짚어진 아버지의 어깨가 작아 보였다는 그런 아버지는 /빼꾸기 소리처럼/맞깔나고 새초롬하게 먼 길을 떠나셨다. 어릴 적, 대문에는 살구나무가 한 그루 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밀음직스러운 녀석은 어김없이 많은 열매로 우리를 흥분시켰다. 멎을 것이 많지 않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새초롬한 맛에 만족스러웠다. 엔진오일을 관리하기 위해 도착한 그곳엔, 녀석들이 반갑게 반겨주었다. 전주시 팔복동에서 아주 우연히 만난 살구 가족, 그들이 있어, 고향도, 살구나무도, 아버지에 관한 생각도 떠올릴 수 있었다. 짧은 시간이지만 행복했다. 한 남자로, 아버지의 외롭고 험운 삶이었다. 그에 비하면, 아직 짚어질 명예가 많다. 어떤 명예도 좋다. 다 짚어지고 갈 것이다. 당당하게 말이다. 한 남자가 그랬던 것처럼…….



박 여 범

용북중학교 · 시인  
문학박사 · 문학평론가

## 사설

## 결혼 이주여성 검정고시

전북 완주군이 결혼 이주 여성들을 돋기 위해 펼치고 있는 학력 취득 지원 사업이 큰 성과를 얻고 있다. 지난 4월 9일 실시된 2022년 1차 검정고시에서 9명의 이주 여성이 응시해 전원 합격했다.

이번 검정고시에는 초졸 과정 2명, 중졸 과정 4명, 고졸 과정에 3명이 응시했다. 이들은 완주군의 학력 취득 지원 사업을 통해 도움을 얻었다.

완주군가족센터에서 초졸 과정을 이수하고 중·고졸 과정은 전문학원에서 수학했다. 초졸 과정은 지난 2월부터 주 2회 4시간, 중·고졸 과정은 주중 매일 같이 4시간 이상을 학원 수업을 수강했다.

고졸 과정에 합격한 체아름(캄보디아)씨는 “매일같이 빙나침을 학원에서 보내고 집에서도 가족들의 배려 덕분에 공부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그는 “초졸부터 시작했는데 배우면 배울수록 재밌고 이런 대화 문을 두드려 볼까한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초졸 과정부터 차근 차근 단계를 밟아 학력을 취득하는 결혼 이주 여성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항상 도전하고 성취하며 다양한 취업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기 바란다.

## 다주택 양도세 완화 문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1년간 한시적으로 중단됐다.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완화되고, 다주택자에 적용되던 주택 보유·거주기간 '리셋' 규정도 폐지됐다.

이는 5월 10일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현행 소득세법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2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기본세율(6~45%)에다 20% 포인트를, 3주택자에는 30% 포인트를 중과한다.

다주택자가 규제 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양도 차익의 최고 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금이 무려 82.5%까지 상승한다.

이 같은 중과 조치는 다주택자에게 세 부담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다.

주택 매매의 장애 요인으로 지적 받기도 했다. 서울 주택 거래량은 2017년 18만8천 건에서 2021년엔 12만7천 건으로 급감했다.

여기에는 다주택자 중과 조치도

작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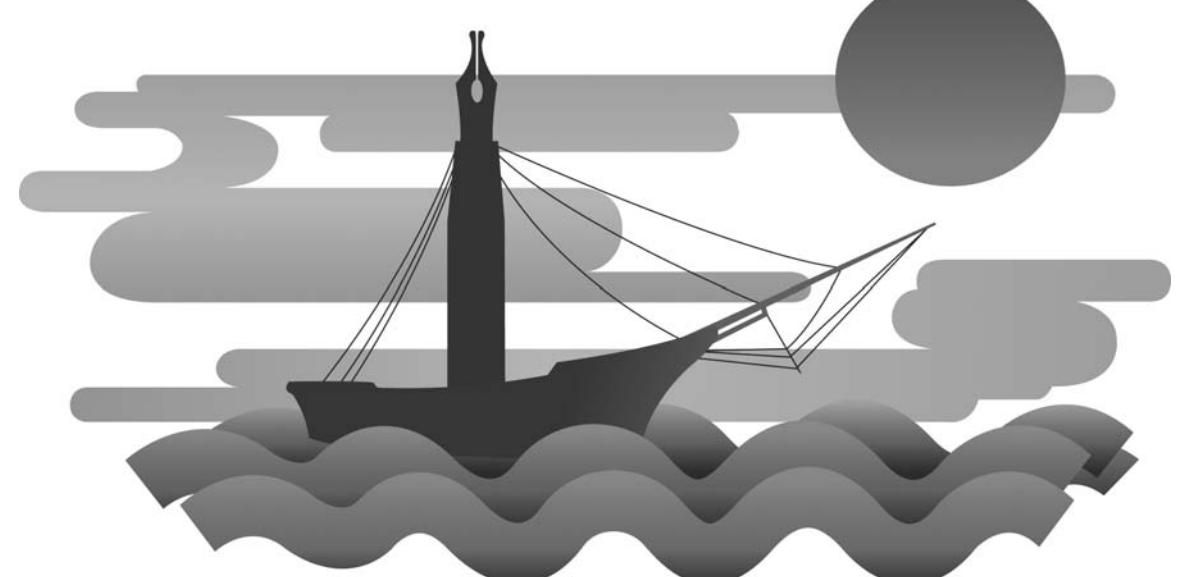
개정된 시행령은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에 대해 1년간(22.5.10 ~ 23.5.9) 한시적으로 기본 세율과 장특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최고 45%의 기본세율(지방세 포함 시 49.5%)으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는 장특공제를 통해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개정된 시행령으로 인해 2주택은 1억3950억원, 3주택 이상은 1억8925억원을 덜 내게 된다.

기존 중과 대비 2주택은 3억2500억원, 3주택 이상은 4억2525만원 감세 효과가 생긴다. 그간 잠겼던 매물이 얼마나 시장에 나오고 거래량이 늘어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담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빼놓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